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4서식] <개정 2020. 5. 27.>

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		
	전화번호		E-mail
신청(변경) 내용	대상폐기물	종류	양(톤)
	재활용 장소	소재지	면적(제곱미터)
	재활용 유형		
	기타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재활용환경성평가서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1.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·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, 신청인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, 상호 등을 적습니다.
2.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·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, 신청(변경)내용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신청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	→	접수 (평가서 첨부)	→	심의	→	심사결과 통보	→	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	→	(승 인)재활용 (미승인)재검토
신청인		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	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	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	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